

[재)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금정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정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재)금정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장

01. 모집인원

임용직위	선발인원	직무내용
상임이사	1명	▪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02. 응모 자격

구분	지원요건
자격요건	○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가능한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필수요건	○ 금정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결격)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금정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모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 33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정관 제11조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재단 이사로 임용 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03. 근무조건

□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4. 1. ~ 2028. 3. 31.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임용 예정일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09:00~18:00)
근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정문화재단(금정구 체육공원로 7 외)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연기준) : 48,000천원 ~ ○ 부가급여 : 별도(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제한 -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04. 전형 및 심사방법

□ 전형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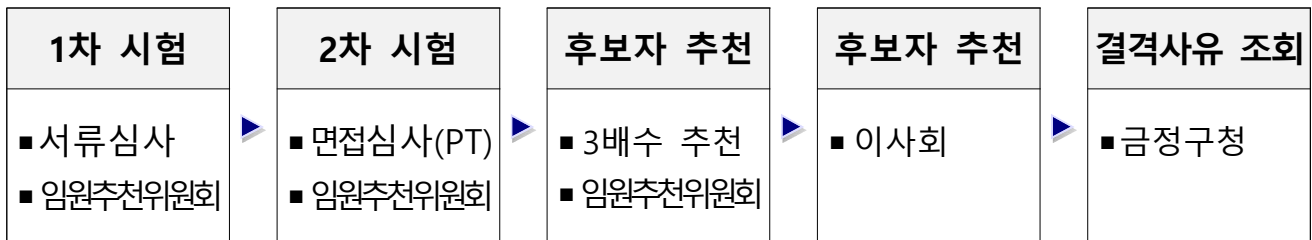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6. 1. 30.(금) ~ 2. 18.(수)	
지원서 접수	2026. 1. 30.(금) ~ 2. 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8.(수) 18:00 마감 ○ 채용시스템(사람인)
1차(서류심사)	2. 24.(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홈페이지 등 발표 ○ 합격자발표 : 2. 26.(목) 한
2차(면접심사)	3. 5.(목) 14:0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홈페이지 등 발표 ○ 합격자발표 : 3. 6.(금) 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대상자 결정	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홈페이지 등 발표 ○ 최종합격자발표 : 3. 25.(수) 한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재단 채용 웹사이트(사람인) : <https://gjfac.applyin.co.kr/>

□ 심사방법



채용절차	합격배수	심사항목
1차 서류전형	5배수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재단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면접전형 (PT)	3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계획과 관련된 PT발표(10분 이내) 후 관련내용 질의·응답 실시
최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능력(20), 전문성(20), 리더십(20), 조직친화력(20), 윤리관(20) ■ 면접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3배수 인원을 이사회에 추천 ■ 이사회에서 구청장에 추천 ■ 결격사유 조회 ■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최종 임명

05. 제출 서류

구분	제출항목	비고
지원서 접수 시	1. 지원서	사람인 서식
	2. 자기소개서	사람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인 서식
	4. 경력기술서 - 경력 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 - 경력 내용 상세히 기록	재단서식
	5. 직무 수행계획서	재단서식
	6. 증빙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교육사항 증명서 - 자격·면허증 - 기타 증빙서류	사본

※ 증빙자료 첨부되지 않은 이력 불인정

※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

※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06. 기타 사항

- 공개모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미제출 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임명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임명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무효함
-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모자는 임명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응모자는 지원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executive@gjfac.org
- 응모자가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임명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서류를 파기함

문의사항 금정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51-715-6782

붙임 1

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 지원서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	
			[한자]		뒷자리는 *표 처리 바랍니다	
		주소	신주소로 작성 바랍니다			
		소속	직장명 및 부서 :		직위 :	
		전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비고
	00년 00월 ~ 00년 00월	고등학교			
	00년 00월 ~ 00년 00월	대학교			
	00년 00월 ~ 00년 00월	대학원	(세부전공:)		
	00년 00월 ~ 00년 00월	대학원	(세부전공:)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00.00.00.~00.00.00. (0년 00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00.00.00.				
		00.00.00.				
		00.00.00.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위	근무기간	퇴직사유	비고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자기 소개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신주소로 작성 바랍니다

○ 자기소개 (구체적으로 작성)

※ 문화예술분야 전문지식 습득 및 관련 경력, 금정구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재단 경영자로서 자세 및 가치관, 기타 등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글꼴 : 맑은고딕,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경력기술서

작성 자

기관/부서	주요 업무	기 간
세부 내용		
주요 업적 및 성과		

기관/부서	주요 업무	기 간
세부 내용		
주요 업적 및 성과		

기관/부서	주요 업무	기 간
세부 내용		
주요 업적 및 성과		

직무 수행계획서

지원분야		성명	
------	--	----	--

사업 (업무명)	세부추진계획 (성과목표 등)	평가지표

※ 작성요령

- 운영목표제시 : 직무수행계획서 서두에는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문화재단의 자립기반 구축 및 금정구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운영목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기술함
- 사업(업무)명 :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기술함
- 세부추진계획 :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등 포함), 운영(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연차별 추진 일정 등
- 평 가 지 표 : 추진결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지표를 계량화하여 제시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금정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